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42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9. 25. ~ 10. 15.)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09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 제7109호, 2019. 5. 2.></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7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u>2019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 제7109호, 2019. 5. 2.></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 <u>2020년 12월 31일</u>-----.</p>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 할인을 부칙 제7109호에서 2020년 말까지 연장함에 따라 세외수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감면손실액 산출 = '19년 제로페이 이용료 1달 평균 감면액 × 12개월
(단위 : 천원)

구 분	'19. 5월~9월 제로페이 할인액	1달 평균 할인액	'20년 할인 예상액	비고
금 액	9,605	1,921	23,052	사용료는 '19년과 동일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김선영 주무관(02-2133-7432)